

한국 전자선화증권 등록기관 지정제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esignation System of Registration Authority of Electronic Bill of
Lading in Korea

최한별(Han-Byul Choi)

중앙대 대학원 무역물류학과 석박사통합과정
주최자

최석범(Seok-Beom Choi)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교신저자

목 차

- | | |
|---------------------------|----------|
| I. 서론 | V. 결론 |
| II. 선행연구분석 | 참고문헌 |
| III. 한국 전자선화증권 등록기관 지정제도 | ABSTRACT |
| IV. 등록기관의 지정현황과 지정제도상의 특징 | |

국문초록

선화증권의 위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UN과 CMI 노력의 발판으로 볼레로 선화증권이 도입된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까지 전자선화증권이 실질적으로 도입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법률적, 제도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과제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특히 볼레로 선화증권의 경우에는 도입초기에 개별국가의 전자무역사업자들과의 협업사업모델을 제시하지 못하여 제대로 이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적으로 볼레로 선화증권의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상법에서는 전자선화증권의 등록기관 지정제도를 도입하여 현재 KTNET이 법무부에 의해 등록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전자선화증권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그러나 한국의 상법모델은 볼레로 선화증권보다 글로벌차원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또한 등록기관 지정제도상의 특징과도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한국 전자선화증권 등록기관 지정제도를 살펴보고 지정제도 상의 특징을 도출하고 그 특징과 관련된 이슈와 문제점을 규명함으로써 한국에서 전자선화증권이 보다 활성화되는데 그 연구목적을 두고 있다.

주제어 : 선화증권, 전자선화증권, 등록기관, 지정제도, 한국 상법

I. 서론

전자선화증권의 위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UN이나 CMI에서는 해상운송장의 사용과 전자선화증권의 도입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발판으로 유럽에서 볼레로 프로젝트를 기초로 하여 SWIFT와 TT Club이 볼레로인터내셔널을 설립하여 볼레로선화증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스템을 가동한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까지 전자선화증권이 실질적으로 도입되지 않고 있다.

볼레로선화증권 이외에도 다양한 전자선화증권 모델이 검토되고 도입되기도 하였지만 법률적, 제도적 부분에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점들로 인해 거의 사용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볼레로 선화증권의 경우에는 도입초기에 개별국가의 전자무역사업자들과의 협업사업모델을 제시하지 못하여 기대와 달리 활발히 이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전자선화증권의 도입에 있어서 핵심이슈가 되는 것이 바로 권리등록기관이며 지금까지 전자선화증권의 도입모델에 있어서 권리등록기관의 유형에 따라서 운송인등록시스템과 중앙등록시스템으로 구분되는 특징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전자선화증권에서 등록기관의 유형과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전자선화증권의 성공여부는 권리등록기관의 성공적인 도입여부에 있기 때문에 전자선화증권에서 권리등록기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어떠한 권리등록기관을 설정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도입모델의 성공여부를 판가름하였는데 CMI모델의 경우 운송인등록기관에 입각한 운영모델을 제시하였으나 운송인의 과중한 책임과 비용부담으로 실패하기도 하였다.

국제적으로 볼레로선화증권의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상법에서는 전자선화증권의 등록기관 지정제도를 도입하여 현재 KINET이 법무부에 의해 등록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전자선화증권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그러나 한국의 상법모델은 글로벌차원에서 볼레로선화증권보다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은 등록기관 지정제도상의 특징과 연관되어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러한 지정제도에 대한 연구보다는 전자선화증권을 부수적으로 논하는 연구(이창숙 외1인(2010))나 운용실증실험(최석범(2004), 기능에 대한 사례분석(최석범 외1인(2005)), 운용종합계획수립(최석범 외1인(2004), 전자선화증권의 활용(강원진 외1인(2005))에 치중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본 논문은 한국 전자선화증권 등록기관 지정제도를 살펴봄으로써 지정제도상의 특징을 도출하고 그 특징과 관련된 이슈와 문제점을 규명함으로써 한국에서 전자선화증권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II. 선행연구분석

1. 전자선화증권의 최근 선행연구

정윤세(2011)는 한국형 전자선화증권을 연구하면서 한국형 전자선화증권의 개발과정과 특성 그리고 활성화전략을 논하고 있는데 활용을 위한 개선과제, 변형문제와 해결방안, 확산을 위한 향후과제를 논하고 있다. 최명국(2012)은 전자선화증권에 관한 CMI규칙의 재조명을 연구하면서 American President Lines(APL)이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이 영국법, 한국법, 로테르담 규칙에서 적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Lee(2013)는 주요선사의 전자선화증권의 도입현황을 살펴보면서 활성화 저해요인을 분석하고 있지만 실제로 전자선화증권을 도입하고 있는 선사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 선화증권관련 업무의 전자화현황을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활성화 저해요인으로 전자선화증권 활용의 부정적 인식, 신뢰성문제, 기술적 문제를 규명하고 있다.

박길상(2009)은 전자선화증권의 유통성 확보를 위한 요건을 연구하면서 법적 기반 차원에서 전자선화증권 유통의 한계, 전자선화증권 활용을 위한 인프라부족을 살펴보고 로테르담규칙과 한국 상법상의 유통성요건을 다루고 있다. 정완용(2008)은 개정 해상법상 전자선화증권 규정을 연구하면서 개정상법상 전자선화증권제도와 전자선화증권 시행규정을 검토하였는데 상세한 절차규정은 업무준칙에서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충배·정용균(2007)은 선화증권의 글로벌 연동을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운용모델에 관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으며 법제도, 선화증권의 국제운용 규칙, 문서의 표준화, 인증 및 보안체계, 제3의 운영기관 과 같은 기반환경 요소들을 해결과제로 제시하였다.

채훈외 2인(2013)은 전자선화증권의 실용화를 위해서는 전자선화증권 모델 간의 호환성 확보, 사고발생에 대한 법적·시스템적 대비책 마련, 정부지원을 통한 이용료 부담완화 및 사용자 인식의 전환, SWIFT망을 이용한 전자선화증권 시스템의 적용 등과 같은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전자선화증권 등록기관에 관한 연구

최석범(2012)은 전자선화증권의 제도적 모델 사례를 분석하면서 등록시스템의 유형을 분석하고 있는데 중앙등록시스템이 적합하고 은행이나 선사관련 기관이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최석범(2008)은 2007년 개정 상법의 배경과 주요내용을 살펴보면서 등록기관 운영상의 문제로서 지정된 등록기관에 등록된 전자선화증권의 법적 효력의 한계와 운송인의 인도거절과 관련된 규정문제 등을 제기하였다.

한학희외 2인(2010)은 전자선화증권에 관한 CMI규칙의 재해석을 논하면서 제도적 모델의 등록기관 유형을 언급하면서 등록시스템의 유형에 관계없는 개방형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CMI규칙을 개정할 필요성을 논하고 있다.

최석범외 1인(2008)은 국내외의 전자선화증권 관련 법률의 도입배경과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한국 상법상의 전자선화증권 모델을 CMI규칙, 볼레로규약집의 전자선화증권 모델과 비교 분석하였으며 한국 상법상 전자선화증권 모델의 특징으로 등록기관의 지정제도 그리고 전자선화증권의 운영방식에서의 등록제도채용 및 세부적인 절차에서의 전자증권방식채용을 논하고 있다.

박기혁외 2인(2009)은 개정 상법 제862조와 관련된 전자선화증권 시행규정의 내용상의 구체적인 논점을 검토하면서 유가증권의 전자화방식으로서 전자증권방식과 전자등록방식을 논하고 있고 등록기관의 지정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상과 같이 개정상법상의 전자선화증권을 다루고 있는 논문들은 있지만 등록기관의 지정제도를 세밀히 분석하여 그 특징을 살펴보는 논문이 없었다는 점에서 선행연구들과의 차별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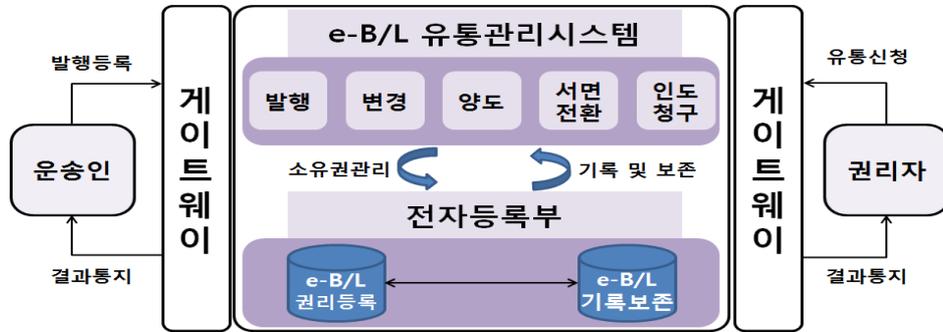
Ⅲ. 한국 전자선화증권 등록기관 지정제도

1. 등록기관의 의의와 등록기관의 지정요건

1) 등록기관의 의의

시행규정상 전자선화증권의 등록기관은 “법무부 장관의 지정을 받아 전자선화증권의 발행 등록, 양도, 서면선화증권으로의 전환 및 관련 전자기록의 보존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¹⁾ 이와 같이 전자선화증권의 등록기관의 역할을 살펴보면 <그림 1>과 같다.

1) 상법의 전자선화증권 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 제2조.



〈그림 1〉 전자선화증권의 등록기관의 역할

2) 등록기관의 지정요건

시행규정상 등록기관의 지정요건은 다섯 가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첫째, 법인요건 둘째, 기술능력요건 셋째, 재정능력요건 넷째, 시설 및 장비요건 다섯째, 관리운영요건이다.²⁾

(1) 법인요건

전자선화증권의 등록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그 기관이 법인이어야 한다. 자연인 이외에 법률에 의하여 권리능력이 인정되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게 한 것이 법인이다.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만 성립되는데 법인의 종류는 구성요소에 따라 재단법인과 사단법인, 법인의 설립목적에 따라 영리법인(상법상의 회사)과 비영리법인이 있다. 또한 목적·준거법·강제성·공권력 등을 표준으로 하여 공법인(국가·공공단체)과 사법인(상법·민법상의 법인) 및 중간법인(공기업 등)이 있으며 우리나라에 주된 사무소가 있고 우리나라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는 내국법인과 외국법에 근거하여 설립되는 외국법인으로 분류된다. 이와 같은 모든 법인은 등록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다.

(2) 기술능력요건

기술능력요건은 전문자격증을 구비한 전문 인력의 구성을 규정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기술 인력을 합한 수가 12인 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첫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정보통신기사·정보처리기사 및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이나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을 갖춘 자 1인 이상 둘째,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보호 또는 정보통신 운영·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2) 상법의 전자선화증권 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 제3조.

자 1인 이상 셋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의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인증업무에 관한 시설 및 장비의 운영·비상복구대책 및 침해사고의 대응 등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1인 이상 넷째, 무역관련 금융업무나 해운물류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1인 이상 등이다.

(3) 재정능력요건

재정능력요건은 2가지로 제시하고 있는데 첫째, 200억 원 이상의 순자산(총자산에서 부채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을 보유할 것 둘째,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이용자에게 발생시키는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에 가입할 것 등이다. 특히 등록기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 사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4) 시설 및 장비요건

시설 및 장비요건으로 첫째, 운송인, 송하인 또는 수하인 등 등록기관의 이용자가 전자선화증권의 등록, 배서, 양도, 제시 등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 둘째, 전자선화증권의 송·수신일시를 확인하고, 전자선화증권 관련 기록을 생성 및 보존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 셋째, 전자선화증권의 발행·유통 관련 시설 및 장비를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시설 및 장비 넷째, 그 밖에 전자선화증권의 발행 및 유통을 원활하고 안전하게 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한 시설 및 장비 등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전자선화증권 관련 기록을 생성 및 보존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요건으로 이러한 요건은 한국에서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상 전자문서보관센터가 지정·운영되고 있는데 이러한 센터와 연관된 업무라고 볼 수 있다.

(5) 관리운영요건

관리운영요건은 상기 시설 및 장비요건에 따른 시설 및 장비의 관리·운영 절차 및 방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전자선화증권 및 관련 전자기록의 보존에 관한 사항 등 업무수행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등록기관의 업무준칙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업무준칙은 볼레로 서비스의 볼레로 규약집(Bolero Rulebook)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상법상의 규정과 시행규정 등을 보완하고 등록기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운영규칙(Operating rules)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기술적 이유 또는 권리 사용상의 이유로 필요한 경우에 제1항 제4호에 따른 시설 또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거나 그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와 3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 및 장비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등록기관이 제1항 제4호에 따른 시설 및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상기규정에서 시설 및 장비사용계약과 관련된 내용은 전자선화증권의 권리등록의 중대성으로 판단하건데 직접 구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하고 업무수행 상 단기에 걸쳐 서비스가 종료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필요한 조항으로 볼 수 있으므로 추후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 등록기관의 지정절차와 지정요건변경

1) 등록기관의 지정절차

(1) 지정신청과 구비서류

등록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법인의 정관, 지정요건에 따른 기술능력·재정능력·시설 및 장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사업계획서, 제3조 제2항에 따라 전자선화증권의 운용기술지원 관련 사업자와 시설 및 장비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사실 및 계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와 법인의 대표자 및 임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법인의 대표자 및 임원이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³⁾

(2) 심사 및 자료제출요구 및 신청인의 의견청취

법무부장관은 등록기관 지정을 위한 심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신청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⁴⁾

(3) 업무준칙 심사 및 보완요청

법무부장관은 제3조 제1항 제5호의 업무준칙을 심사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신청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3) 상법의 전자선화증권 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 제4조 제1항.

4) 상법의 전자선화증권 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 제4조 제2항.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⁵⁾ 특히 자료보완요청과 관련해서는 신청인이 그 요구를 따르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내용을 보완하지 않아도 된다는 단서와 관련해서는 추후 수정되거나 삭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등록기관 지정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지정신청에 대하여 순자산, 기술인력, 시설·장비의 적정성 및 등록업무의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등록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⁶⁾

(5) 지정고시

법무부장관은 등록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지정서를 교부하고 지정받은 자의 명칭·주소, 지정일자 그 밖의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을 관보 및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고시하여야 한다.⁷⁾

2) 지정요건의 변경

등록기관은 등록기관으로 지정된 후 제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될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등록기관의 기술능력·재정능력·시설 및 장비의 안전운영 등을 점검한 후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⁸⁾ 이러한 지정요건의 변경과 관련하여 지정요건은 등록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요건을 하향 변경할 수 있는 가능성을 법적으로 열어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추후 개정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3. 감독 및 지정취소

1) 감독

법무부장관은 등록기관의 법 또는 이 영의 준수여부를 감독하고 제3조 제1항에 따른 등록기관의 기술·재정능력 및 시설과 장비의 안전운영 등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다.⁹⁾

- 5) 상법의 전자선하증권 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 제4조 제3항.
- 6) 상법의 전자선하증권 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 제4조 제4항.
- 7) 상법의 전자선하증권 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 제4조 제5항.
- 8) 상법의 전자선하증권 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 제5조.

2) 지정취소

법무부장관은 등록기관이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그 취소 사유로서 첫째,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둘째, 제3조 제1항 각호의 지정요건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셋째, 법인의 합병·파산·영업의 폐지 등으로 사실상 영업을 종료한 때이다.¹⁰⁾ 법무부장관은 등록기관의 지정취소를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¹¹⁾ 법무부장관은 지정취소를 하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고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고시하여야 한다.¹²⁾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 취소된 등록기관에 대하여 그 취소 전에 이미 발행등록된 전자선화증권의 양도 등 관련 업무를 계속하게 하거나 관련 전자기록 보존업무를 다른 등록기관 등에 이관하게 하거나 제12조에 따른 서면 선화증권으로 전환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¹³⁾

특히 등록기관이 지정 취소된 경우에 법무부장관이 취소 전에 이미 발행된 전자선화증권의 관련 업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추후 논의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IV. 등록기관의 지정현황과 지정제도상의 특징

1. 지정현황

2008년 7월 18일 법무부 공고 제208-98호를 통하여 전자선화증권 등록기관 지정을 위한 신청공고가 게시되었고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의 신청에 따라 심사를 통하여 2008년 9월 26일에 법무부고시 제208-131호를 통하여 법무부장관은 KTNET을 전자선화증권의 등록기관으로 지정하였음을 고시하였다. 1989년 정부의 종합무역자동화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1991년 한국무역협회(KITA)의 100%출자로 설립되었으며 1992년에 정부로부터 무역자동화 지정사업자로 지정받은 KTNET은 전자무역인프라 구축을 통해 복잡한 수출입업무의 전 과정을 자동화 서비스로 구현하여 전자무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이다. 2009년 3월 30일에 전자선화증권의 발행등록, 양도, 보관 등 유통과정을 웹 기반 전자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자선화증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www.eblkorea.or.kr을 정식 오픈하였다.

- 9) 상법의 전자선화증권 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 제14조.
- 10) 상법의 전자선화증권 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1항.
- 11) 상법의 전자선화증권 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2항.
- 12) 상법의 전자선화증권 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3항.
- 13) 상법의 전자선화증권 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4항.

2. 지정제도상의 특징

1) 중앙등록 시스템으로서의 역할

기존의 대표적인 전자선화증권의 도입모델에서의 등록기관의 유형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표 1> 전자선화증권 등록기관의 유형

구분	키방식의 유형과 양도가능여부	등록시스템의 유형	유통성 절차
CMI	개인키/양도불가	운송인등록기관	운송인에게 양도메시지를 전송하고 운송인은 그 내용을 양수인에게 통지하고 이를 수락하면 새로운 개인키를 교부하고 신소지인으로 등록함으로써 양도가 이루어짐
BIMCO	Digital Signature, 양도가능	중앙등록기관 - 운송인의 제3자(BIMCO)	송화인이 양도메시지(디지털서명포함)를 관리기관에 전송하고 관리기관이 양수인에게 수취메시지를 전송하고 양수인이 이를 수락하면 양도가 이루어짐
Bolero	공개키/개인키 방식에 근거한 Digital Signature, 양도불가	중앙등록기관 - TT Club과 SWIFT가 공동출자한 국제블레로회사	소지인이 지시식 당사자나 지참인 소지인을 지정하고 백지배서하고 이를 상대방이 수락하면 권리가 이전되고 권리등록소에 기록되는 절차를 거침
TEDI	공개키/개인키 방식에 근거한 디지털서명, 양도불가	중앙등록기관-TEDI의 등록소(Repository)	소지인이 권리이전 지시를 RSP에 전송하면 RSP는 양수인에게 권리이전을 통보하고 양수인이 수락하면 권리이전을 양도인에게 통보하고 등록소에 이를 등록하는 절차를 거침
한국 상법 모델	공개키/개인키 방식에 근거한 디지털서명, 양도불가	중앙등록기관, 제3자(KTNET)	등록기관에 양도신청 전자문서를 송신하고 이를 등록기관이 전자등록부에 기재한 후 양수인에게 송신함으로써 전자선화증권의 양도가 이루어짐

자료: 최석범(2001), 최석범(2011) 등을 참조하여 제작성.

한국 상법상에서 정하고 있는 등록기관은 중앙등록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기존의 등록기관은 크게 운송인등록기관과 중앙등록기관으로 구분되어 왔다. 그리고 중앙등록기관의 경우에도 운송인이나 운송관련기관이 관여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준중앙등록기관과 완전중앙등록기관으로 구분된다.(최석범(2012)) 등록기관의 두 가지 유형인 운송인등록시스템과 중앙등록시스템에 따른 특징은 <표 2>와 같다.

〈표 2〉 운송인등록시스템과 중앙등록시스템의 비교

구분	운송인등록기관	중앙등록기관
장점	당사자 간의 거래내용 보호용이 절차의 단순화와 저렴한 비용 당사자 간의 법률구성 용이 선화증권소지인 파악용이 제3자에 의한 사기예방	전자선화증권의 공신력 제고와 관련당사자의 참가용이 전문적 관리기능으로 보안수준제고 중소규모의 운송인 참가가능
단점	다수의 운송인등록기관에 대한 은행의 수용의 한계 운송인의 추가비용 부담 직접전송 시 운송인의 정보변경 가능성 중소규모 운송인의 도입곤란	당사자의 추가비용 문제 중앙등록기관의 파산 시 자료처리문제 제3자의 개입에 의한 절차의 복잡화와 분쟁 해결 상의 곤란
사례	Reinskou 모델, CMI규칙	Seadocs, Bolero, 한국상법모델

자료 : 최석범(1997)를 참조하여 재작성.

등록기관의 유형에 따라 장단점이 존재하지만 지금까지 시도된 도입모델의 사례를 통해서 운송인등록방식보다는 중앙등록방식에 의한 전자선화증권의 이용이 시스템 도입에 따른 비용이나 유지·관리 부분 등에 있어서 더 안정적이라는 것이 입증되었다.

2) 운영상 폐쇄형 시스템으로서의 역할

한국 상법상에서 정하고 있는 등록기관의 경우 법무부에 의해 지정된 등록기관만을 유효한 등록기관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동등한 능력을 구비하고 있더라도 지정되지 않으면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폐쇄형 시스템이라는 것이 특징이다. 한국 상법 제864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등록기관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전자선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정된 등록기관에 등록하지 않는 이상 한국 내에서는 전자선화증권의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지정제도의 운영은 글로벌표준에도 상응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법률을 제정할 때 법 적용 상의 투명성과 개방성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전자선화증권과 관련된 이러한 법률 체계 하에서는 법 적용 상의 투명성과 개방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 다시 말해, 적어도 법률적용상 투명성과 개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특정시스템이나 기술에 종속적인 법률구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전자무역과 전자상거래에 적용되는 모델이나 기술이라는 것은 시시각각이 변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모든 국가에서는 이러한 모델이나 기술에 종속적인 법률을 구성하지 않기 위해 모델 중립성과 기술 중립성, 시스템

중립성을 유지한 법률체계를 유지하려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국제협약의 경우에는 이러한 경향을 유지하려는 특성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전자상거래 법률이 기술 중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것은 1997년 7월의 미국 클린턴 정부에 의한 글로벌 전자상거래 기본구성(Framework for Global Electronic Commerce)과 2000년의 EU 입법부의 입장이었다. EU의 입법부는 처음으로 기술 중립성 개념을 제안하였는데 “규제라는 것은 기술 중립적이어야 하며 가능한 어떠한 새로운 규제, 정책 및 절차가 새로운 서비스에 있어서 특정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EUROPA(1998)) 이러한 기술 중립성 개념은 EU 기술 법제에서 채택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 도입된 전자선화증권 등록기관 지정제도는 전자선화증권의 글로벌 운용을 생각한다면 법률의 기술 중립성 유지라는 점에서 전혀 바람직하지 않은 제도라고 볼 수 있다.

3) 외국의 발행과 유통을 고려하지 않는 시스템

한국 상법상의 등록기관은 외국에서 발행되어 한국에서 유통되거나 한국에서 발행되어 외국으로 유통되는 경우를 고려하지 않은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다.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등록기관이 운영되기 때문에 외국으로의 유통을 위해 상대국이나 상대방이 한국의 등록기관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한국의 등록기관을 이용한 전자선화증권의 해외유통은 이루어질 수 없다. 국내에서 발행되어 외국으로 유통되는 경우 실무적으로 외국의 양수인이 전자선화증권을 양수하기 위해서는 미리 등록기관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등 자신에 관한 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의 양수인이 이러한 번거로운 절차를 기꺼이 수행할 수 있는가는 미지수이다. 편리를 위해 전자선화증권 등록시스템이 외국 양수인에게는 번거로운 절차를 수반하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종이선화증권의 발행을 요구할 가능성이 많아지게 된다.

그리고 외국 양수인이 이러한 절차를 수행하여 전자선화증권의 소지인이 되는 경우에도 여타의 전자선화증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자서명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공인인증서를 교부받아야 하는데 국내에 있지도 않은 외국인을 상대로 공인인증서를 교부하는 것도 실무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일 수 있다.

또한 외국에서 발행되어 국내로 유통되는 경우에 외국의 등록기관을 이용하여 발행된 전자선화증권은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한국에서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한국의 등록기관에 다시 재등록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 경우에 재등록하여야

하는 주체가 외국의 등록기관과 외국의 발행 선사 중에 어느 쪽이 되어야 하는지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주체문제가 해결된다 해도 한국의 등록기관에 재등록하는 절차를 당사자가 기꺼이 수행할 것인지는 미지수인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종이선화증권으로 교체하여 제공할 가능성이 많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외국의 당사자가 한국의 등록기관에 재등록하는 경우에도 미리 당사자의 정보를 등록하여야 하고 전자서명을 위한 공인인증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불편을 야기 시킬 수 있다.

4) 정보보호를 고려한 등록시스템

지정요건에서 정보보호 전문가와 비상복구대책 및 침해사고의 대응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기술 인력에 포함시킴으로써 정보보호를 고려한 등록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이 IT강국이라는 것을 무색하게 하는 정보보안체계의 허술함과 낮은 인식 차원에서도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볼 수 있다. 전자선화증권이 유가증권이라는 점에서 전자선화증권 운용시스템은 보다 완벽한 보안체계를 구축하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정보보호의 중요성으로 인하여 한국의 등록기관이 시행하고 있는 e-B/L Korea 이용약관에서도 안전성확보 및 이용자 보호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다.

5) 지정 후 지정요건의 완화를 허용하는 등록시스템

등록기관의 지정요건은 지정 후에 통지와 보완을 조건으로 변경을 허용하고 있다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전자선화증권의 등록기관 지정요건은 전자선화증권의 운용을 위해서 최소한의 기본조건으로 제시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정요건의 변경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시스템의 안전성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정된 이후에 지정요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허용되지 않아야 하므로 통지와 보완을 조건으로 할 것이 아니라 통지와 승인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 더 합당한 변경절차라고 볼 수 있다.

6) 등록기관의 상호연계를 고려하지 않은 시스템

한국 내에서 지정된 등록기관의 운영차원에서는 외국의 등록기관과의 상호연계를 고려하지 않고 있는 시스템으로 개발되었다. 상호연계와 관련하여 시행령이나 e-B/L이용약관에서 관련내용을 규정하고 있어야 하지만 이러한 내용이 전혀 규정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글로벌 전자무역의 실현이라는 과제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적어도 불레로 서비스

와 같은 글로벌 전자선화증권 서비스업체를 고려하여 연계성을 대비한 법 규정이 마련되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7) 전자무역기반인프라를 고려한 기관의 지정

한국의 전자선화증권의 등록기관으로 한국의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인 **KTNET**이 지정되었다는 점에서 전자무역기반인프라를 고려한 지정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KTNET**은 전자무역자동화사업자로 시작하여 전자무역문서보관소, 공인인증기관, 전자무역기반사업자로 지정되어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는 차원에서는 전자무역관련 종합서비스 제공업체로서 손색이 없기 때문에 전자선화증권의 등록기관으로 지정된 것은 서비스 제공차원에서도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전자무역 종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업체는 국제적으로도 많지 않다. 따라서 전자무역과 관련된 종합서비스 업체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고 이러한 종합 솔루션을 국제적으로 보급할 수 있는 기회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8) 기존의 관행을 고려하지 않는 등록기관의 역할

등록기관의 역할 중에서 기존의 관행과는 다른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다. 볼레로의 경우에는 <표 3>과 같이 당사자의 역할을 분명하게 지정하고 있고 운송인만이 선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한국 상법모델에서는 등록기관이 전자선화증권의 권리자로부터 종이선화증권으로 전환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 종이선화증권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볼레로 규약집(Bolero Rulebook)에서는 소지인이 운송인에게 종이선화증권을 교부하도록 요청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전자선화증권이나 종이선화증권의 발행주체를 운송인으로 분명하게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상법은 기존의 실무와 전자선화증권의 도입모델과도 상이한 당사자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이 때 기재내용의 상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기재내용을 믿고 선의취득한 제3자의 경우 누구를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가의 피소당사자의 지정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표 3> 볼레로 선화증권 상의 당사자의 역할

기능	당사자						
	운송인	송화인 소지인	지시식 소지인	담보권자 소지인	지참인 소지인	소지인	수화인 소지인
B/L발행	O	X	X	X	X	X	X
소지인지정	O	O	O	O	O	O	O
지시인의 지정	O	O	O	O	O	X	X
백지배서	O	O	O	X	X	X	X
지참인소지인지정	O	O	O	O	O	X	X
수화인지정	O	O	O	O	O	X	X
담보권자소지인지정	X	O	O	O	O	O	X
담보의 실행	X	X	O	O	X	X	X
B/L제출	X	X	O	X	X	X	O
수정요구	X	O	O	O	O	O	O
수정허가	O	X	X	X	X	X	X
수정거부	O	X	X	X	X	X	X
종이B/L전환	X	O	O	O	O	O	O

자료: Bolero.net, *BOLERO RULEBOOK*, 1st ed., September 1999, p.21.

앞서 언급한 지정제도상의 특징들 중에 앞으로 전자선화증권의 활성화에 장애요인이 되는 특징과 그렇지 않은 것을 분류하자면 <표 4>와 같다.

<표 4> 지정제도상 특징의 분류

긍정요인	장애요인
중앙등록 시스템으로서의 역할	운영상 폐쇄형 시스템으로서의 역할
정보보호를 고려한 등록시스템	외국의 발행과 유통을 고려하지 않은 시스템
지정요건의 완화를 허용하는 등록시스템	상호연계를 고려하지 않은 시스템
전자무역기반인프라를 고려한 기관의 지정	기존의 관행을 고려하지 않는 등록기관의 역할

V. 결론

지금까지 한국 상법에 근거하여 한국 전자선화증권 등록기관 지정제도에 대하여 살펴보고 그 특징을 언급하면서 관련 이슈와 문제점을 규명하였다. 법무부는 전자선화증권의 등록기관

으로서 KINET을 지정하고 있는데 KINET은 전자무역기반서비스를 비롯하여 다양한 솔루션을 가지고 있어 전자무역 종합서비스업체로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한국의 전자선화증권 등록기관의 특징으로서 첫째, 한국 상법상에서 정하고 있는 등록기관은 중앙등록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기존에 전자선화증권의 등록기관은 크게 운송인 등록기관과 중앙등록기관으로 구분되어 왔는데 상용성을 입증한 중앙등록기관을 채용한 것을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법무부가 등록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폐쇄형 등록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상법상에서 정하고 있는 등록기관의 경우 법무부에 의해 지정된 등록기관이기 때문에 동등한 능력을 구비하고 있더라도 지정되지 않으면 등록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 셋째, 한국 상법상의 등록기관은 외국에서 발행되어 한국에서 유통되거나 한국에서 발행되어 외국으로 유통되는 경우를 고려하지 않은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등록기관의 특징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차원에서 전자선화증권의 이용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넷째, 정보보호를 배려한 등록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정요건에서 정보보호 전문가와 비상복구대책 및 침해사고의 대응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기술 인력에 포함시키고 e-B/L Korea 이용약관에서도 관련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등 상당히 정보보호를 배려한 등록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다섯째, 등록기관의 지정요건은 지정 후에 통지와 보완을 조건으로 변경을 허용하고 있다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지정된 이후에 지정요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허용되지 않아야 하므로 통지와 보완을 조건으로 할 것이 아니라 통지와 승인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 더 합당한 변경절차라고 볼 수 있다. 여섯째, 한국 내에서 지정된 등록기관의 운영차원에서는 외국의 등록기관과의 상호연계를 고려하지 않고 있는 시스템으로 개발되었다는 것이다. 적어도 불레로 서비스와 같은 글로벌 전자선화증권 서비스업체를 고려하였다고 하면 이러한 글로벌 서비스업체와의 연계성을 대비한 법 규정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일곱째, 한국의 전자선화증권의 등록기관의 지정에서 전자무역기반인프라가 고려되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KINET은 전자무역과 관련된 종합서비스 업체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고 이러한 종합솔루션을 국제적으로 보급할 수 있는 기회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여덟째, 등록기관의 역할 중에서 기존의 관행과는 달리 접근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 있다. 특히 종이선화증권의 발행을 등록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선화증권의 기재내용의 상이와 관련되어 소가 제기되는 경우 피고를 운송인과 등록기관 어느 당사자로 하여야 하는가의 문제가 유발되기도 한다.

참 고 문 헌

- 강원진·조상현, “무역거래에서 전자선화증권의 활용에 관한 고찰”, 「통상정보연구」, 제7권 제4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05.12, pp.199-218.
- 박기혁·김희철·김태환, “개정 상법상 전자선화증권 도입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전자무역연구」, 제7권 제3호, 중앙대학교 한국전자무역연구소, 2009.8, pp.91-115.
- 박길상, “전자선화증권의 유통성 확보를 위한 요건에 관한 연구”, 「해운물류연구」, 제25권 제4호, 한국해운물류학회, 2009.12, pp.963-980.
- 박홍균, “전자선화증권과 기능상 동등물 가치의 문제점”, 「국제상학」, 제16권 제2호, 한국국제상학회, 2001.6, pp.249-267.
- 양재훈·김재학·나정호, “우리나라의 전자선화증권 활성화를 위한 법적 과제”, 「국제상학」, 제22권 제3호, 한국국제상학회, 2007.9, pp.297-319.
- 이위식, “전자식 선화증권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고찰”, 「관세학회지」, 제6권 제2호, 한국관세학회, 2005, pp.353-377.
- 이창숙·강원진, “신용장거래에서 전자기록의 심사에 따른 문제점에 관한 고찰 : e-Nego 시스템과 전자선화증권을 중심으로”, 「통상정보연구」, 제12권 제2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10.6, pp.85-107.
- 이충배·정용균, “전자선화증권의 글로벌 운영 모델을 위한 개선방향과 과제”, 「통상정보연구」, 제9권 제3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07.9, pp.161-180.
- 정완용, “개정 해상법상 전자선화증권 규정에 관한 고찰”, 「한국해법학회지」, 제30권 제1호, 한국해법학회, 2008.4, pp.85-113.
- 정윤세, “한국형 전자선화증권 활성화 전략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13권 제4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11.12, pp.51-79.
- 채훈·이대욱·최광호, “전자선화증권의 실용화를 위한 저해요인의 연구”, 「e-비즈니스연구」, 제13월 제4호, 국제e-비즈니스학회, 2013, pp.221-244.
- 최명국, “전자선화증권에 관한 CMI 규칙의 재조명”, 「무역상무연구」, 제54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12.5, pp.235-260.
- 최석범, “전자선화증권의 활성화를 위한 도입모델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22권 제3호, 한국무역학회, 1997, p.419.
- 최석범, “한국에서의 전자선화증권의 도입논의에 관한 연구 - 법률적 관점을 중심으로”, 「국

- 제상학], 제22권 제4호, 한국국제상학회, 2007.12, pp.285-309.
- 최석범, “전자선화증권의 제도적 모델 사례분석과 시사점”, 「전자무역연구」, 제10권 제1호, 중앙대 한국전자무역연구소, 2012.2, pp.87-109.
- 최석범, “한국 상법 전자선화증권 모델의 평가”, 「무역연구」, 제7권 제3호, 한국무역연구원, 2011.2, p.189.
- 최석범, “전자선화증권의 운용실증실험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통상정보연구」, 제6권 제3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04.12, pp.321-349.
- 최석범 · 김태환, “전자선화증권의 기능에 대한 사례분석과 시사점”, 「통상정보연구」, 제7권 제1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05.3, pp.171-194.
- 최석범 · 신인광, “한국에서의 전자선화증권 운용을 위한 종합계획수립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6권 제1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04.4, pp.129-153.
- 최석범, “한국에서의 전자선화증권관련 법률도입의 문제점에 관한 소고”, 「전자무역연구」, 제6권 제1호, 중앙대학교 한국전자무역연구소, 2008.5, pp.209-226.
- 최석범 · 김태환, “한국상법상의 전자선화증권 모델의 특징과 활성화방안”, 「전자무역연구」, 제6권 제3호, 중앙대학교 한국전자무역연구소, 2008.11, pp.171-196.
- 한학회 · 한상훈 · 김태환, “전자선화증권에 관한 CMI규칙의 재해석에 관한 연구”, 「전자무역연구」, 제8권 제4호, 중앙대학교 한국전자무역연구소, 2010.11, pp.107-127.
- 최석범, “전자선화증권의 유통성의 법적 효력에 관한 연구-Bolero선화증권을 중심으로”, 「한국해운학회지」, 제33호, 한국해운학회, 2001.12, p.76.
- EUROPA*, “Opinion of the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on the “Proposal for a Council 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minors and human dignity in audiovisual and information services,” *OJ C 214*, 10 July, 1998, p.25 para.3.2.5.
- Lee, Hee-yong, “A Study on the Adoption and Impediment about Electronic Bill of Lading of Major Shipping Companies,”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Vol.15, No.3, September, 2013, pp.423-451.
- Bolero.net, BOLERO RULEBOOK, 1st ed., September 1999, p.21.

ABSTRACT

A Study on the Designation System of Registration Authority of Electronic Bill of lading in Korea

Han-Byul Choi* · Seok-Beom Choi**

It was ten years ago that Bolero Bill of Lading was introduced on the basis of efforts of UN and CMI to solve the crisis of Bill of Lading, but Electronic Bill of Lading is not utilized in practice owing to the problems to be settled. Bolero Bill of Lading is not in widespread use owing to absence of collaboration model between Bolero and e-Trade service providers in each nation in the early stage. In the situation that Bolero Bill of Lading is not utilized in practice, Korean Commercial Law regulates the designation of the registration authority of Electronic Bill of Lading. Therefore, the Minister of Justice designated KTNET as Registration Authority of Electronic Bill of Lading and KTNET opened the e-B/L Korea (www.eblkorea.or.kr) to provide the Electronic Bill of Lading service to domestic trade community. But there are many problems in supplying the Electronic Bill of Lading service by the e-B/L Korea in comparison with Bolero Bill of Lading. These problems are related with the characteristics of designation of Registration authority of Electronic Bill of Lading.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ntribute to the activation of Electronic Bill of Lading domestically by studying the designation of Registration authority of Electronic Bill of Lading in Korea and find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designation and the issues and problems regarding the characteristics.

Key Words : Bill of Lading, Electronic Bill of Lading, Registration Authority, Korean Commercial Law

* Graduate School, Chung-Ang University (Main Author)

** Professor,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Chung-Ang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